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이병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3.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 의원)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 및 수온 양극화로 인한 해양에서의 극한 현상 출현 빈도 증가 등에 따라 수산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는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은 2015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법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각각 분법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할 때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입법례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의 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